

# 입원환자의 권리

뉴욕주 정신보건국  
정신의학센터  
(NYS OMH PC)



Office of  
Mental Health



# 뉴

욕주의 법과 정책은 뉴욕주  
정신의학센터에 입원한 환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본 책자는 그러한 권리와 귀하 또는 지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생각될 경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저희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는 누구나  
자신의 필요에 맞는 진료와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직원들은 환자의  
존엄성과 개인적 청렴성을 충분히  
존중하는 동시에 이 치료를 능숙하고  
안전하며 인간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사무국장



## 목차

권리와 법률 .....	2
정신위생법 입원 .....	2
형사소송법 및 교정법 입원 .....	4
개인정보보호 및 기밀 유지 .....	7
일과 교육 .....	8
소통 .....	8
의료 결정 위임장 .....	10
양질의 진료를 받을 귀하의 권리 .....	10
이의를 제기할 권리 .....	11
제지 및 격리 .....	11
수술 및 기타 치료 .....	12
연구 .....	13
범죄 배경 .....	13
퇴원 .....	13
귀하를 위한 법무 지원 .....	14
전화 지원 문의 .....	15

## 권리와 법률

대부분의 환자들은 정신 위생법에 따라 뉴욕주 정신의학센터에 입원합니다. 귀하도 입원 환자라면 본인의 다양한 기본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이 권리들 중 일부는 절대적이며 제한 받을 수 없습니다. 기타 권리는 의료적 사유로 법적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또는 교정법에 따라 입원한 경우, 귀하의 권리에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권리가 임상적 이유로 제한될 경우, 해당 근거를 귀하에게 설명하고 귀하의 기록에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 제한이 유효한 기간도 명시되어야 합니다.

귀하는 본인의 권리 제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병원 원장에게 갈 수 있습니다. 도움은 담당 병원의 방문자 위원회인 정신위생법률 서비스(Mental Hygiene Legal Service, MHLS) 및 특수한 필요를 지닌 사람들의 보호를 위한 NYS 사법센터(Justice Center)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전화번호는 정신의학센터의 "입원 환자의 권리" 포스터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직원들도 귀하에게 이 번호를 얻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고 다른 정보 출처는 이 책자 끝에 나와 있습니다.

## 정신 위생법 입원

입원 후에는 입원 상태와 정신위생법률 서비스(Mental Hygiene Legal Service, MHLS)의 지원을 받을 권리가 명시된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누군가가 정신 위생법에 따라 뉴욕 정신의학센터에 입원하면 입원은 비공식,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 세 가지 일반 범주 중 하나로 분류됩니다.

**비공식 입원**은 누군가가 치료를 요청하고 공식 또는 서면 신청서 없이 입원할 경우에 이뤄집니다. 이 신분인 동안 귀하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본 병원에서 나갈 수 있습니다.

**자발적 입원**은 16세 이상 성인이 서면으로 입원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에 이뤄집니다. 18세 미만 성인의 경우, 부모, 법적 보호자, 후견인 또는 가까운 친척이 당사자 대신 신청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신분의 환자는 언제든지 퇴원 의향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18세 미만 성인의 경우, 입원을 신청한 당사자, 동등 관계이거나 가까운 관계의 다른 당사자 또는 정신위생법률 서비스(Mental Hygiene Legal Service, MHLS)에서도 퇴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퇴원을 서면으로 요청한 자발적 환자는 정신의학센터장의 판단에 따라 비자발적 입원 요건을 충족하여 입원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한 퇴원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센터장은 72시간 이내에 판사에게 환자를 지킬 것을 신청해야 합니다.

자발적 또는 비공식적 신분의 환자로 입원할 경우, 환자는 정신위생법률 서비스(Mental Hygiene Legal Service, MHLS)의 지원을 받을 권리를 포함해 귀하의 신분과 권리에 대해 정기적으로 통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매년 한 번 정신의학센터장과 정신위생법률 서비스(Mental Hygiene Legal Service, MHLS)는 자발적 또는 비공식적 신분을 유지하려는 각 환자의 적격성과 의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비자발적 입원은 다음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이뤄질 수 있습니다.**

1. 의료 진단서, 두 명의 의사가 환자를 검사하고 정신과 시설에서 비자발적 치료 및 진료が必要하다고 증명해야 합니다. 이것은 때때로 비공식적으로 "two p.c."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명의 의사에 의해 인증됨"의 약어임. 이 진단서에는 개인과 친한 사람(예: 법적 보호자, 후견인, 친족, 치료 정신과 의사 또는 그 당사자와의 동거인) 또는 여러 정부 공무원 중 한 사람이 작성한 입원 신청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의료 진단서로 비자발적 신분으로 입원했거나 해당 신분으로 전환되었을 경우, 최대 60일 동안 정신의학센터에 입원할 수 있습니다. 귀하 또는 친척, 친구의 판단 또는 정신위생법률 서비스(Mental Hygiene Legal Service, MHLS)에 근거해 귀하가 비자발적 신분으로 입원할 필요가 없다고 밝혀질 경우 귀하 또는 타인은 이 것에 대한 법원 청문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60일이 끝날 때와 그 후 주기적으로, 정신의학센터장은 판사에게 비자발적 신분의 환자로 유지해 달라는 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한 신청이 이루어지면 귀하에게 통지해야 하며 청문회에서 정신위생법률 서비스(Mental

Hygiene Legal Service, MHLS) 또는 귀하의 변호사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대리할 권리가 있습니다.

2. 사회봉사국장 또는 사회봉사국장이 지명하는  
진찰의사의 증명서

이 증명서는 당사자가 본인이나 타인에게 심각한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고 즉각적인 입원 치료 및 진료가 적절한 정신 질환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런 식으로 입원하면 72시간 이내에 직원 정신과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정신과 의사가 진단서에 근거해 비자발적 입원 요건을 충족한다고 확인하면 최대 60일 동안 정신의학센터에 입원될 수 있습니다. 60일을 초과하는 비자발적 보관 절차와 환자의 청문회 권리는 위의 1절에 설명된 내용과 동일합니다.

3. 본인이나 타인에게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는 정신 질환이 있고 정신의학센터에서 즉각적인 관찰, 치료 및 진료가 적절한 정신 질환이 있다는 주장에 근거한 응급 입원.

이런 식으로 입원하면 48시간 이내에 직원 정신과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그/그녀가 귀하가 응급 입원 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하게 되면, 최대 15일까지의 기간 동안 병원에 머무르게 될 수 있습니다. 15일 이상 비자발적 입원을 하려면 의료 진단서에 근거한 비자발적 입원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신분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청문회에 대한 귀하의 권리에 대한 설명은 위의 1절을 참조하십시오.)

## 형사소송법 및 교정법 입원

개인은 형사소송법(CPL) 또는 교정법의 다음 조항에 따라 정신의학센터에 입원 및 수용될 수 있습니다.

- 감옥에 수감되어 재판이나 선고를 기다리는 수감자는 교정법 508항에 따라 정신의학센터에 입원할 수

있습니다. 이 입원은 환자가 교도소 직원의 보호 및 구금 상태에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 정신 위생법에 따른 비자발적 입원과 동일합니다.

- 형사 소송에서 피고인으로서 소송 절차를 이해하거나 자신의 변호를 도울 능력이 없거나 불가능할 수 있는 당사자는 형사 소송법 제730조에 따른 여러 법원 명령 중 하나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 명령에 따라 정신과 검사가 이뤄지는 동안 병원에 최대 30일까지 감금되어야 합니다. 검사를 완료하는데 필요한 경우 판사는 최대 30일의 추가 기간 동안 구금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집행 또는 유예 명령은 법적으로 무능력하고 중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을 대상으로 1년 또는 2년 동안 유효합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법원 명령 중 하나에 따라 중범죄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받을 수 있었던 최대 형량의 3분의 2 이하로 집행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명령들 중 하나가 만료되었을 때 당사자는 정신위생법 입원 자격(비공식,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으로 신분이 전환되거나 퇴원해야 합니다.

- 법적으로 정신적 "질병 또는 장애"라고 불리는 이유로 범죄에 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당사자는 형사 소송법 330.20항에 따른 법원 명령에 따라 병원에 입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신과 평가를 위해 30일 동안 당사자를 수감하라는 검사 명령, 정신병이 있는 것으로 판명된 당사자를 수감하라는 판사가 부과한 조건의 명령과 함께 민사 약속의 명령, 그리고 위험한 정신 장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안전 시설에 배치해야 한다는 수감 명령이 포함됩니다.
- 수감 중인 개인은 교정법 402절에 따라 안전한 병원에 입원할 수 있습니다. 응급 상황을 제외하고 사전 법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환자 본인 또는 환자 대리인이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응급 입원 시에는 나중에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민권

귀하가 정신의학센터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귀하의 시민권을 박탈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법률은 귀하가 선거에 등록하고 투표할 권리, 공무원 순위 및 임명에 대한 권리, 면허, 허가, 특권 또는 법률에서 제공하는 기타 혜택을 얻거나 박탈 또는 거부당하는 것과 관련된 권리를 보유했을 것을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귀하에게는 고용자 또는 타 거주자들이 가하는 학대 및 폭사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정신적, 언어적, 성적 또는 신체적 학대를 당했다고 생각되거나 다른 사람이 이러한 일을 당하는 모습을 목격했다면 최대한 빨리 신고해 주십시오.

## 개인의 인권

뉴욕주 정신의학센터의 모든 당사자는 다른 법률(예: 형사 소송법 또는 이러한 법률에 따라 수용된 개인에 대한 교정법)이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이 절에 열거된 권리를 갖습니다.

귀하에겐 다음 권리가 있습니다.

- 적합한 개인 의복.
-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
- 균형 잡힌 영양식.
- 귀하가 선택한 종교의 예배 또는 무교의 자유.
- 직원 또는 타 거주자가 가하는 학대 및 폭사로부터의 자유.
- 적절한 단장 및 개인 위생용품.
- 의복 및 기타 개인 물품에 대한 합리적 정도의 안전 보관 공간.
- 수면, 목욕 및 화장실에서 합리적 수준의 프라이버시.
- 정신의학센터 안팎의 사람들이 방문하여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가 있는 합리적 시간 동안의 방문객 허용.
- 적절한 의료 및 치과 관리.
- 치료를 위한 개인화된 설계 및 설계 마련에 적극적 참여.

- 질문이나 불만 사항이 있는 경우 시설 책임자, 정신위생법률 서비스(Mental Hygiene Legal Service, MHLS), 병원 방문자 위원회 또는 뉴욕주 사법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주소와 전화번호는 병원에 게시되어 있으며 일부는 본 간행물의 뒷면에 나와 있습니다.)

앞서 언급된 권리는 처벌이나 직원의 편의를 위해 제한받지 않습니다. 이 권리들은 의사의 서면 지시에 의해서만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은 귀하의 임상 기록에 작성되어야 하며 기간과 제한에 대한 임상적 정당성을 명시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보호 및 기밀 유지

법은 귀하를 검사하거나 치료하는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개인 정보 보호 및 기밀 유지에 대한 귀하의 권리와 귀하의 임상 기록 및 귀하에 관한 기타 정보의 기밀 유지에 대한 권리를 부여합니다.

정신보건국(Office of Mental Health, OMH)은 귀하의 기밀 정신 건강 치료 정보를 사용 및 공개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별도의 개인 정보 보호 관행 통지를 제공합니다. 또한, 귀하의 정신 건강 치료 정보와 관련하여 귀하의 권리가 무엇인지, 귀하가 귀하의 치료 기록을 어떻게 사용하거나 공유했는지에 대한 질문이나 불만 사항이 있는 경우 누구에게 연락할 수 있는지도 알려줍니다.

일반적으로 귀하 또는 귀하의 법적 대리인이 서면 허가를 하지 않는 한 귀하에 대한 정보는 제공될 수 없습니다. 단, 제한된 상황에서 법률은 특정 개인 또는 조직에 대한 기록 또는 정보의 공개를 허용하거나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 기관과 보험 회사는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수납에 필요한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공개는 귀하의 기록에 남고 귀하는 요청 시 이에 대해 알 권리가 있습니다.

정신의학센터에서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귀하의 사진을 찍는 것을 희망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사진의 목적과 사용에 대해 알 권리가 있으며 귀하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이의가 고려됩니다.

형사소송법 또는 교정법에 따라 수용된 환자는 법 집행을 위해 사진을 보관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일과 교육

가능한 경우 개인 소유물과 생활 공간을 유지하는 것을 제외하고 귀하는 어떤 일도 수행하도록 요구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일은 회복의 핵심 중 하나로 간주되기 때문에 정신보건국 (Office of Mental Health, OMH) 시설은 주 및 연방 노동법에 따라 노동 또는 직업 훈련 기회를 제공합니다.

귀하는 업무 또는 직업 훈련에 대해 구두 및 서면으로 통지를 받아야 합니다. 귀하는 급여율, 급여 기간, 총 급여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어떤 공제가 이루어지며 각각의 이유에 대해 통지를 받아야 합니다. 귀하는 업무 및 직업 훈련에 관한 뉴욕주 정신보건국 (Office of Mental Health, OMH) 규정의 조항에 대해서도 통지를 받아야 합니다.

귀하가 5세에서 21세 사이인 경우, 주립 정신의학센터 외부에서 받을 자격이 있는 것과 동일한 교육 및 직업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소통

### 장애

병원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효과적인 소통을 보장하기 위해 보조 지원 및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에도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시각 장애가 있는 장애인들에게는 더 큰 활자체나 시각 매체의 청각장애인용 버전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청각 장애인들에게는 통화 음성증폭, 자막 또는 개인의 필요를 충족하는 기타 적절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청력 손실이 있고 미국 수화도 사용하는 장애인들은 아래의 소통 지원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 소통 지원

영어를 구사할 줄 모르거나 미국 수화를 사용하는 청각 장애인을 포함해 모국어를 사용하고 싶다면 유자격

통역사가 무료 통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귀하의 허락 하에 치료 팀과 대화하기를 원하지만 영어를 할 수 없는 가구원에게도 적용됩니다.

## 서신

담당 치료 팀이 귀하 또는 다른 사람의 복지를 위해 특정 제한이 필요하다고 결정하지 않는 한 밀봉, 개봉 및 검열되지 않은 우편물을 보내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는 우편물의 제한 사항에 대해 통지를 받아야 하고 판결에 대해 정신의학센터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귀하가 읽거나 쓸 수 없는 경우, 치료 팀은 해당 구성원 중 한 명에게 귀하를 대신하여 읽거나 쓸 수 있도록 배정하고 이를 위한 타당한 시간을 제공할 것입니다. 영어를 구사할 수 없다면 필요할 때 귀하의 모국어어를 구사하는 대리인이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 전화

전화를 원할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방문자

귀하는 타당한 시간에 방문자를 맞이할 권리가 있고 방문자가 방문할 때 사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방문자를 거부할 권리도 있습니다.

방문 제한은 의사의 서면 지시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사전에 귀하와 상의할 것입니다. 이 지시는 귀하의 임상 기록에 남겨야 합니다. 지시에는 제한에 대한 임상적 정당성과 효력이 유지되는 특정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후견인

주립 정신의학센터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경우, 판사가 귀하 대신 판결을 내릴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후견인이 필요한지 여부와 후견인이 누구인지 결정합니다(일반적으로 자격이 있는 경우 친구와 친척 고려). 귀하는 소송 절차에서 정신위생법률서비스(Mental Hygiene Legal Service, MHLS) 또는 다른 변호사의 대리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의료 결정 위임장

귀하는 의료 대리인을 지정하는 의료 대리인을 완료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대리인은 귀하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경우 귀하 대신 의료 결정을 내릴 다른 성인입니다. 귀하의 의료 결정을 내릴 능력이 없는 경우 의료 제공과 관련된 개인의 서면 지침인 사전 지시서와 관련하여 뉴욕주법에 따른 권리가 있습니다. 입원하면, 병원에서 이러한 권리에 대해 설명하고 요청 시 대리인을 지정하고 추가 지원을 제공하는 양식을 제공합니다.

## 양질의 진료를 받을 귀하의 권리

귀하에겐 치료에 대한 개인 플랜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기본 치료 계획에는 치료 목표, 적절한 프로그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행할 치료 또는 치료에 대한 설명과 진행 상황을 검토하기 위한 특정 일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귀하에게 개별 치료 계획을 수립하고 수정하는 데 최대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계획 수정을 요청할 권리가 포함됩니다.

귀하는 능숙하고 안전하며 인도적인 방식으로 귀하의 필요에 맞는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주 및 연방법에 따라 직원은 인종, 피부색, 성별, 신념, 종교, 연령, 출신 국가 또는 장애의 성격과 심각성을 이유로 귀하를 차별할 수 없습니다.

입원환자로서 귀하는 정기적인 의료 및 치과 검진을 받게 됩니다. 의료 및 치과 문제에 대한 치료가 이용 가능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한 후속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투약은 치료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가능한 대체 치료법과 함께 목적과 가능한 부작용에 대해 설명을 들어야 합니다.

중병이나 부상을 입은 경우, 귀하가 지명한 보호자, 가족 또는 가까운 친구에게 즉시 통지가 전달됩니다.

## 이의를 제기할 권리

귀하는 모든 형태의 치료 및 진료에 반대하고 동의하지 않는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귀하가 반대할 경우, 치료 팀은 귀하가 수용할 수 있는 대체 치료 또는 절차를 제공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귀하에게 제안된 약물 또는 기타 의학적 치료는 귀하에게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귀하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제안된 치료 및 귀하의 이의를 정신보건국(Office of Mental Health, OMH) 담당의와 법원 모두에서 완전히 검토해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응급 상황을 제외하고, 귀하는 법원의 승인 없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정신위생법률 서비스(Mental Hygiene Legal Service, MHLS) 또는 다른 대리인이 행정 및 법원 절차에서 귀하를 지원해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제지 및 격리

환자를 제지 및 격리하는 것은 부상을 예방하기 위한 최후의 안전 조치이며 정신보건국(Office of Mental Health, OMH)에서는 응급 상황에서만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지시할 수 있는 특정 유형의 구속 장치에는 4점 제지, 5점 제지, 손목 벨트 고정대, 안정 담요가 있습니다. 직원들은 적절하고 효과적인 최소한의 제한 유형을 사용해야 합니다.

격리는 사람이 마음대로 나갈 수 없는 방에 혼자 있을 때 발생합니다.

개인 검진에 근거한 의사의 서면 지시에 의해서만 제지 또는 격리가 가능합니다. 의사가 그 자리에 없는 경우, 수석 임상의는 환자가 자신이나 타인에게 즉각적인 위험을 나타내는 경우에 한하여 의사가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동안 시술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시는 성인의 경우 1~2시간 동안만 유효하며 지시를 갱신하려면 의사가 다른 검사를 수행하고 다른 지시를

작성해야 합니다. 제지 또는 격리 상태에 있는 동안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활력 징후를 정기적으로 측정해야 합니다. 제지 및 격리는 처벌, 직원의 편의 또는 치료의 대응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지나친 무력을 가해서도 안 됩니다.

귀하가 제지 또는 격리된 후에는 최대한 빨리, 그리고 귀하가 원하는 즉시 직원은 해당 개인과 함께 에피소드를 둘러싼 상황을 검토해야 합니다. 직원은 귀하의 도움으로 무엇을 다르게 할 수 있었고 미래의 응급 사태를 어떻게 피할 수 있었는지 확인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병원 품질 보증 프로그램은 또한 제지 및 격리를 관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수술 및 기타 치료

수술, 전기충격 요법(충격 치료), 주요 치료 또는 실험 약물 또는 절차는 적절한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귀하가 18세 미만이거나 판사가 귀하가 치료에 동의할 능력이 없다고 결정하지 않는 한, 그러한 절차는 귀하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만 이뤄질 수 있습니다. 즉, 이익과 피해 가능성에 대한 완전하고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 받은 후 절차에 동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귀하가 18세 미만이거나 치료에 동의할 능력이 없는 경우, 그러한 절차에 대한 승인은 가까운 친척, 의료대리인(의료대리인에서 지정한 자), 법원이 지정한 대리인, 대리 의사결정 위원회 또는 판사로부터 득할 수 있습니다. 단, 대리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제기하는 당사자가 비자발적 상태이고 결정에 대한 사법적 또는 행정적 검토를 요청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한 그러한 절차는 비응급 상황에서 시행될 수 없습니다.

정신의학센터장은 응급 상황 발발 시 당사자의 동의 없이 생명이나 사지를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전기경련 요법은 응급 치료로 간주되지 않으며 정신의학센터장이 응급 절차로 사용을 승인할 수 없습니다.

## 연구

귀하는 본인의 개인 치료 계획과 아무 마찰이 없는 경우에만 연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 참여에 동의하거나 거부한다고 해서 법에서 제공하는 권리, 특권 또는 보호가 박탈되지 않습니다.

귀하는 치료 계획의 필수 부분이 아닌 직원 교육 활동에 참여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범죄 배경

입원 시, 귀하의 전과 여부는 컴퓨터로 자동 확인됩니다. 보고서 자체는 수령 후 2주 이내에 파기되지만, 형사 사법 서비스부(DCS)의 정보는 요약되어 귀하의 임상 기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귀하에게는 본인의 범죄 이력 정보가 수집될 것이고 틀린 정보의 정정을 요청할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서면 통지가 발송됩니다.

## 퇴원

정신위생법에 따라 입원한 경우, 귀하는 치료 팀이나 판사가 더 이상 입원 치료 및 진료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결한 후 퇴원하여 지역사회로 돌아가게 됩니다.

서비스 계획은 퇴원 전에 준비됩니다. 공인 대리인이 있다면 대리인에게도 귀하와 함께 계획의 전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계획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감독, 약물 치료, 애프터 케어 서비스 및 구직 지원에 대한 귀하의 필요에 대한 설명.
- 거주할 거주 유형에 대한 구체적 권고 사항 및 해당 거주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목록.

직원은 공공 서비스 지역 담당부서와 상의해야 하고, 퇴원 전에 공공 지원, Medicaid 및 생활보조금(SSI)에 대한 모든 신청서도 처리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또는 교정법에 따라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는 해당 법률에 따라 석방되거나 퇴원합니다.

## 귀하를 위한 법무 지원

정신위생법률 서비스(Mental Hygiene Legal Service, MHLS)는 여기 입원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대리를 포함한 법률 서비스, 조언 및 지원을 제공합니다. MHLS는 뉴욕주 대법원 산하 기관이며 정신보건국(Office of Mental Health, OMH)이나 어떤 정신의학센터의 소속도 아닙니다. MHLS 직원은 법적 배경을 가진 변호사 또는 사회 복지사입니다. 이 직원들의 의무는 환자가 환자로서의 권리를 이해하고 이를 보호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입원 거부를 당했을 경우, MHLS는 귀하의 적격 여부를 판결해 줄 판사 앞에서 법원 청문회를 받을 수 있도록 주선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없는 경우, MHLS에서 귀하를 대리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정신과적 소견도 얻을 수 있습니다.

MHLS는 환자 학대 및 괴롭힘에 대한 불만 조사를 포함해 다른 방식으로 환자를 돕습니다.

모든 환자, 환자의 가족 및 환자 대신 일하는 다른 당사자들은 언제든지 MHLS 담당자와 자유롭게 개인적으로 소통할 권리가 있습니다. MHLS 담당자의 이름, 사무실 주소 및 전화번호는 각 정신의학센터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원은 요청 시 이 정보를 환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각 정신의학센터의 교환소는 발신자를 MHLS에 연결하거나 전화번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모든 MHLS 서비스는 무료입니다.



## 전화 지원 문의

뉴욕주 정신보건국(Office of Mental Health)은 무료 고객 서비스 전용선을 운영합니다. 다음 번호로 연락하십시오:

**1-800-597-8481**

스페인어 구사 발신자 번호(en Español)는 다음과 같습니다.

**1-800-210-6456**

특수한 필요를 지닌 사람들의 보호를 위한 NYS 사법센터(Justice Center) 무료 전화:

**1-855-373-2122**

Joint Commission에 연락하거나 이 조직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려면 전화

**1-800-994-6610**

또는 이메일

**[complaint@jointcommission.org](mailto:complaint@jointcommission.org)**

로 연락하십시오.